

2025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 애니메이션 기업의 IP 유통망 다각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애니메이션 콘텐츠 사업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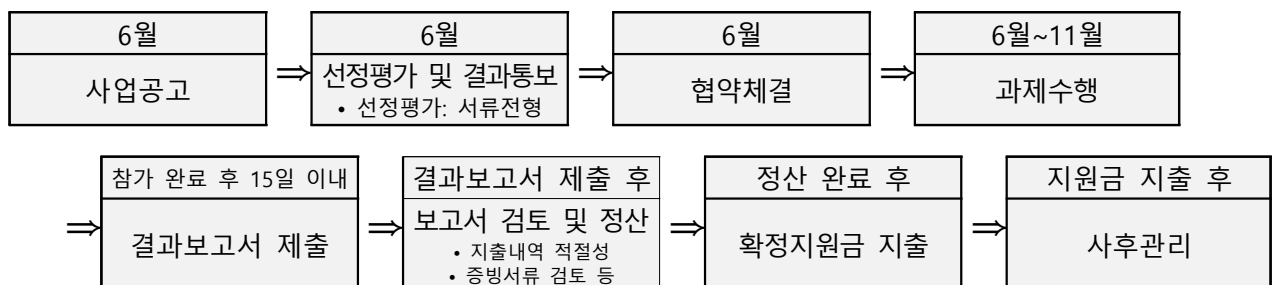
-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제작 공정 단계별 지원체제 구축
- 지역 애니메이션 기업의 IP 유통망 다각화 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지역 애니메이션 콘텐츠 사업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명: 2025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세부 사업명: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사업
- 사업내용: 해외 콘텐츠 전시·마켓 참가에 따른 비용 지원
 - ※ 지원 항목을 제외한 기타 비용은 참가기업 자부담
- 지원규모: 총 3개 기업(기업당 5,000천원, 총 15,000천원)

지원내용	과제수	지원금액	총지원금	사업기간
해외 콘텐츠 전시·마켓 참가지원	3건	금5,000천원	금15,000천원	협약체결일 ~ 2025.11.30.

- ※ 동일 과제로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전시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정산검토 시행, 부가세 제외 비용 환급
-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과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과제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5.11.30.
- 추진일정



※ 위 일정은 신청서 접수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재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지사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애니메이션업 신고를 필한 ‘애니메이션업자’

※ 서식 <신청자격 확인서>의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됨

지원 및 평가 제외

지원·평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1.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또는 자)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중인 기업(또는 자)
3.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징수한 금액을 체납한 기업(또는 자)
※ 기술료 등 징수액 미납부자 포함
4.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관리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기업(또는 자)
5.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기업(또는 자)
6. 주관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 목적, 제작범위,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③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3. 모집분야

항목	내용																
지원분야	국산 애니메이션의 수출을 위한 해외 콘텐츠 전시·마켓 참가 비용 지원 ※ 지원 항목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시회 참가 후 비용 정산 지급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지사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애니메이션업 신고를 필한 ‘애니메이션업자’																
지원내용	해외 콘텐츠 전시마켓 행사 참가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 중 아래 항목 지원 <table border="1"> <tr> <td>참가비용</td><td>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비즈매칭 비용, 뱃지 구입비용</td></tr> <tr> <td>부스임차료</td><td>부스 공간 및 기본 부스 임차료</td></tr> <tr> <td>부스디자인비</td><td>부스디자인 제반비용 ※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진행</td></tr> <tr> <td>장치임차료</td><td>전기, 통신 등 부대장치 임차료</td></tr> <tr> <td>운송료</td><td>소포비 등 물품 운반비용</td></tr> <tr> <td>홍보물제작비</td><td>홍보영상,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td></tr> <tr> <td>통역료</td><td>통역사 섭외 비용(진흥원 실비보상기준)</td></tr> <tr> <td>항공료</td><td>항공운임 : 이코노미(2등) 정액 ※ 국내·해외 항공권만 인정 / 항공권 예매, 변경 등 수수료 불인정</td></tr> </table> ※ 위의 내용 제외한 기타 비용은 참가기업 자부담	참가비용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비즈매칭 비용, 뱃지 구입비용	부스임차료	부스 공간 및 기본 부스 임차료	부스디자인비	부스디자인 제반비용 ※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진행	장치임차료	전기, 통신 등 부대장치 임차료	운송료	소포비 등 물품 운반비용	홍보물제작비	홍보영상,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	통역료	통역사 섭외 비용(진흥원 실비보상기준)	항공료	항공운임 : 이코노미(2등) 정액 ※ 국내·해외 항공권만 인정 / 항공권 예매, 변경 등 수수료 불인정
참가비용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비즈매칭 비용, 뱃지 구입비용																
부스임차료	부스 공간 및 기본 부스 임차료																
부스디자인비	부스디자인 제반비용 ※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진행																
장치임차료	전기, 통신 등 부대장치 임차료																
운송료	소포비 등 물품 운반비용																
홍보물제작비	홍보영상,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																
통역료	통역사 섭외 비용(진흥원 실비보상기준)																
항공료	항공운임 : 이코노미(2등) 정액 ※ 국내·해외 항공권만 인정 / 항공권 예매, 변경 등 수수료 불인정																
지원조건	○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 선정 기업이 선 지출(완납), 정산 인정금액에 한하여 후 지급(사후지원) ○ 해외전시마켓에 한하여 참가비용을 지원하며, 전시참가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실적증빙서류(수출계약서, 수출실적증명서 등), 정산보고서(비용증빙 등) 제출하여야 함. 미이행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체결, MOU체결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관 가능하며, 결과 증빙(계약서 사본 등) 필수 ○ 단순 전시회 관람·견문을 목적으로 신청불가 ○ 동일 과제로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지정서류 일체 ② 기타 실적 증빙서류 - (보유시) 최근 3년 수출실적 증명서 사본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세청 발급 서류 · 수출입실적증명서 구매확인서 등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정보통신(KNET) 발급서류 · 수출자의 공급계약서 및 납품증빙, 입금내역 등 매칭 증빙 가능 서류 ※ 단순 은행 거래 내역, 내부 재무회계 자료 등은 불인정하며, 계약서 등 매칭 통하여 실질 수출이 확인된 서류만 심사함 - 지식재산권, 품질인증 등 콘텐츠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상표, 서비스표 등록증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증 등																
사업완료 후 청구시 제출서류	[기간] 참가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제출서류] ① 결과보고서 ※ 실적증빙서류(수출계약서, 수출실적증명서 등) 포함 ※ 수출계약서는 해당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등 조건과 서명 필수 ② 정산보고서 ※ 지원항목 해당하는 적격증빙에 한하여 부가세 제외 실비 환급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5.6.5.(목) ~ 2025.6.19.(목), 15일간
- 접수기간: 2025.6.13.(금) ~ 2025.6.19.(목) 14: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ee@ofjeju.kr)
 - 서식 준수하여 작성, 제출 후 유선(064-766-0710) 접수확인 필수
- 제출서류 (① 과제신청서 + ② 기타 실적 증빙자료)
 - ① 과제신청서 지정서류 일체

연번	서류명	부수	형식	비고	제출형식
1	과제신청서	각 1부	PDF	30페이지 내외	[연번1~6] PDF 1개로 변환, 제목: 1.과제신청서 (기업명).pdf
2	수행기관 소개서	각 1부	PDF		
3	정부지원 수혜실적	각 1부	PDF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작성	
4	사업비의 적정성	1부	PDF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PDF	참여인력 필수기재	
6	참여 제한 자가진단서	각 1부	PDF		
7	사업자등록증 및 애니메이션업 신고필증	각 1부	PDF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작성	[연번7~13] PDF 1개로 변환, 제목: 2.자격증빙 (기업명).pdf
8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PDF	개인사업자 제외	
9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PDF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행분	
10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PDF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행분	
11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PDF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행분	
12	우대가점 자가진단서	1부	PDF	증빙 식별이 어려울 시 [서식 13] 활용	
13	기타 추가자료	-	PDF		
14	평가위원 추천표	1부	PDF		제목: 3.평가위원 (기업명).pdf

② 기타 실적 증빙자료(자유양식)

※ 첨부된 사업안내서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함

○ 평가자료 정렬방법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	
○ 파일 압축(zip) 후 메일 제출 - 파일명: [해외마켓] 기업명_과제명 - 메일명: [해외마켓] 기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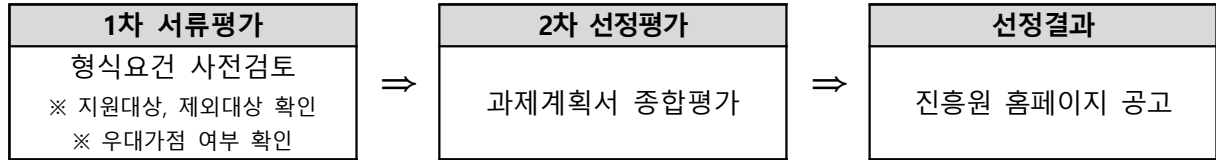
○ 접수 등 관련 문의

문의부서	메일주소	전화번호
콘텐츠기반팀 담당자	hee@ofjeju.kr	064-766-0710

※ 메일 제출 후 전화를 통해 접수확인 필수

5. 평가 및 선정

- 평가일정: 2025년 6월 중(※ 진흥원 내·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의 세부내용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심의위원 후보자 풀에서 15인 후보 선정
- 과제신청자는 각 3개 항목으로 구성된 총 5개분야의 추천항목 중 분야별로 1개씩, 총 5개 번호를 선택함
- 선택한 번호를 수합하여 분야별 다빈도 순에 따라 평가위원 5인 선정
- ※ 다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앞순번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함.

○ 선정기준

- 심의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우수성	○ 콘텐츠 우수성, 잠재성, 활용현황 등 ○ 국내/외 수상이력, 시청률, 매출 등 성과	20
적절성	○ 수출상대국(참가전시회) 선정사유 ○ 전시회 참가비용 적절성 ○ 콘텐츠의 타겟층이 명확하며, 구체적 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30
기대성과	○ 전시품 적합성, 시장성 ○ 목표시장의 수출예상 성과 및 준비성	20
기업경쟁력	○ 기업 기술력 및 콘텐츠&상품 품질 ○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 역량 보유 현황	20
합 계		100
우대가점	제주콘텐츠진흥원 입주기업(인프라 포함)	2
	인증 사회적기업(예비포함)	1
	제주콘텐츠진흥원 온라인캠퍼스 ESG 강의 이수기업	1

※ 심의위원 최고·최저점을 포함한 종합산술평균점수를 산정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하며 나머지는 절사함

※ 동점일 경우 평정요소 ①적절성 - ②우수성 - ③기대성과 - ④기업경쟁력 순으로 함

-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지원조건 · 지원제외 · 사업비정산

항목	내용
지원조건	○ 협약기간(2025년 11월 30일) 내 참여 완료 가능 전시회 ○ 지원항목 해당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 선정 기업이 선 지출(완납), 정산 인정금액에 한하여 후 지급(사후지원) ○ 해외전시마켓에 한하여 참가비용을 지원하며, 전시참가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실적증빙서류(수출계약서, 수출실적증명서 등), 정산보고서(비용증빙 등) 제출하여야 함. 미이행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체결, MOU체결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관 가능하며, 결과증빙(계약서 사본 등) 필수 ○ 단순 전시회 관람·견문을 목적으로 신청불가 ○ 타 기관 동일 과제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제외	○ 사업비 산출에 있어 그 근거가 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가 아닌 경우 ○ 사업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협약기간(2025년 11월 30일) 내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경우
사업비정산	○ 참가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 결과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 등 발생한 경우 진흥원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6. 지원조건 등 기타사항

항목	내용
기타사항	○ 평가 과정에서 총 지원예산 범위 내 지원과제 개수 조정 가능하며, 적격 과제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과제는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순위와 명단은 비공개함
지원 고지의무	○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실을 표기·고지하여야 함 (예) 참가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콘텐츠진흥원

8. 결과물 활용사항

- 아래사항에 한하여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한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및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활용권한을 인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행사 및 홍보 등 활용
 -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 책자 발간 등
 - 제출한 스틸컷 등의 보도자료 배포 등 비상업적 활용 동의
- 과제 수행 결과물에 홍보를 위한 언론보도 시행 시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사실과 사업성과를 명시해야 함
-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재)제주콘텐츠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9. 과제신청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과제 신청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미비는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제출기한까지 제출 자료의 수정 및 보완 가능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되고,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함
-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필요시 과제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불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진흥원에서 정

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신청기업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이자 포함),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을 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

2025년 6월 5일
(재)제주콘텐츠진흥원장